【 주간 이슈 】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필요성 : 보험사기 감소효과

송윤아 연구위원

□ 도로교통법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합헌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구속력을 잃고 유명무실화됨.
o 헌법재판소 판결(1990년)은 사고운전자의 자기부죄(自己負罪) 거절권 보장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 판결(1991년)은 신고의무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 정함.
o FY2008 자동차사고 신고율은 보험사고 접수건수 대비 21%에 불과한 수준임.
□ 현행 법규상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경미한 상해사고의 경우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남.
□ 경미한 상해사고에서 나타난 경찰신고여부와 지급보험금간 음(-)의 관계는 경찰신고 의 보험사기 감소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o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자일수록 사고를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o 정상적인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손실 또는 부상정도의 과 장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경찰 조사를 거친 사고의 경우 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사고내용에 따른 부상의 객관성 추정이 가능하고, 허위입원에 대한 조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함.
□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의무가 단순히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신고의 진술거 부권 침해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1.	•	서	론
----	---	---	---

- □ 최근 자동차보험환자의 피해과장과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가 문제시되면서 자동차 인적 사고의 경찰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¹⁾.
 - o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여부 또는 피해규모가 가공되거나 과장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 도로교통법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합헌 판결(1990년)과 대법원 판례(1991년)에 의해 구속력을 잃고 유명무실화됨.
 - o 헌법재판소 판결은 사고운전자의 자기부죄(自己負罪) 거절권 보장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은 신고의무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 o 11개 보험회사 기준 FY2009 자동차 인적사고 신고율은 보험담보건수 대비 약 10%에 불과한 수준임.
 - o FY2008 자동차사고 신고율은 보험사고 접수건수 대비 21%에 불과한 수준임.
- □ 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를 실증함으로써 경찰신고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함.

2. 자동차사고의 경찰신고의무 법규

-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상(死傷)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사고에 대해 신속히 신고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 54조 제2항)²⁾.
 - o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조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o 구체적으로 사고지점,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함.
 - o 동 조항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2) 1961}년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제정된 후 1995년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05년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현재 규정을 유지함.



¹⁾ 이종호·김지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높은 입원율 관련 주요국 규제·제도 비교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1.

2011.6.7 취하도록 할 공공복리 필요성에서 제정됨. o 자동차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처벌 됨(동법 제154조 제4호). □ 그러나 1990년 헌법재판소는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도로교통법의 교 통사고 신고의무 및 처벌 조항에 대하여 한정합헌결정을 내림. o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 등과 같이 향후 형사피의자나 피고인 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 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은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된 것일 때에 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를 보장함. o 반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의 교통사고 신고의무조항이 피해자 구호 및 교통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형사책임과 관련 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결정함.

- □ 또한 1991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 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함.
 - o 이로써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자동차사고의 경찰신고의무는 구속력을 잃고 사실상 유명무실화됨.
- 3.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현황 및 특징
 - □ 감소추세에 있는 자동차사고 경찰신고율은 2008년 들어 보험사고 접수건수 대비 21%에 불과한 수준에 그침.
 - □ 상해도별 경찰신고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상정도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음.
 - o 상해도 1~6급의 경찰신고율은 30%이상인 반면, 상해도 13~14급의 경찰신고율은 6% 미만임.



- 4 -

2011.6.7

- 상해급수는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며 상해급수가 높을수록 상해정도가 낮음.

<표 1> 자동차사고의 경찰신고율 현황

(단위 : 건)

연도	연도 2003		2005	2006	2007	2008	
경찰신고 건수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보험사고 접수 건수	735,569	807,204	911,396	965,964	1,018,452	1,027,269	
신고율	32.7%	27.3%	23.5%	22.1%	20.8%	21.0%	

주 : 경찰신고건수는 CY, 보험사고 접수건수는 FY 기준

자료 : 이종호·김지은(2011)

<표 2> 상해도별 인적사고의 경찰신고율 현황

(단위 : %)

상해급수	전체		담보종류		사고형태					
3 M T T		대인배상I	대인배상 +	자기신체	차대차	차대인	차량단독			
1급	52.9	45.0	56.5	39.1	64.1	62.4	44.8			
2급	32.5	32.8	36.5	17.5	46.6	38.9	23.6			
3급	38.3	30.0	40.6	30.7	53.5	42.5	26.8			
4급	38.6	38.3	40.5	27.3	51.3	42.0	32.4			
5급	32.1	29.7	34.0	21.5	44.4	33.5	25.7			
6급	30.5	29.4	32.0	21.1	41.8	31.1	28.2			
7급	26.8	27.8	28.5	19.6	35.2	29.8	21.8			
8급	15.3	18.0	15.5	12.4	16.3	19.8	15.3			
9급	9.3	12.2	9.0	9.7	9.9	14.0	11.9			
10급	12.8	13.0	13.5	8.2	16.2	14.2	11.8			
11급	16.3	16.7	17.1	13.3	21.7	18.2	12.0			
12급	10.7	16.8	10.4	12.8	10.0	12.4	14.2			
13급	5.4	7.0	5.3	7.6	5.3	9.3	9.2			
14급	5.3	8.2	5.0	8.4	4.9	8.2	8.5			
전체	10.1	13.6	9.9	11.7	9.8	16.7	13.7			

자료 : 11개 보험회사의 FY2009 담보별 사고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총 78만 5,380개의 담보가 분석에 이용됨.



- □ 담보별로 경찰신고율을 살펴보면, 동일 상해급수라면 대인배상책임담보일수록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해급수가 낮은 중상사고에서 두드러짐.
 - o 반면 경상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책임담보의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o 상해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인배상I+II 담보의 경찰신고율이 9.9%로 가장 낮음.
- □ 사고형태별로 경찰신고율을 살펴보면, 동일 상해급수라면 차대차 또는 차대인 사고일수록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해급수가 낮은 중상사고에서 두드러짐.
 - o 반면 경상사고의 경우 차대차 또는 차대인 사고의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o 상해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대차사고의 경찰신고율이 9.8%로 가장 낮음.

<표 3> 상해도별 의원급진료와 경찰신고

상해급수	경찰선	· - - - - - - - - - - - - - - - - - - -	경찰미신고건			
경애답구	의원	기타의료기관	의원	기타의료기관		
1급	14.8%	85.2%	18.7%	81.3%		
2급	24.4%	75.6%	27.5%	72.5%		
3급	22.4%	77.6%	27.3%	72.7%		
4급	24.4%	75.6%	27.4%	72.6%		
5급	23.0%	77.0%	28.2%	71.8%		
6급	23.6%	76.4%	27.0%	73.0%		
 7급	28.4%	71.6%	30.5%	69.5%		
8급	37.4%	62.6%	47.0%	53.0%		
9급	42.3% 57.7%		50.5%	49.5%		
10급	35.7%	64.3%	44.0%	56.0%		
11급	13.5%	86.5%	21.6%	78.4%		
12급	27.0%	73.0%	40.8%	59.2%		
13급	40.2%	59.8%	47.8%	52.2%		
14급	37.1%	62.9%	42.9%	57.1%		

자료 : 11개 보험회사의 FY2009 담보별 사고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총 78만 5,380개의 담보가 분석에 이용됨.

□ 차대차 인적사고의 경우 자차과실비율과 타차과실비율의 차이가 작을수록 경찰에 신고 하는 경향이 있음.



- 6 -

- o'자차과실비율-타차과실비율'의 절대값과 경찰신고간 상관계수는 -0.107임.
- o 즉, 동일한 상해급수라면, 분쟁의 여지가 클수록 경찰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 □ 동일한 상해급수라면,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의원급진료 경향이 높음.
 - o 상해도 1급의 경우, 경찰신고건의 14.8%, 경찰미신고건의 18.7%가 의원급진료를 받음.

4.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와 보험사기

- 가. 경찰신고와 보험사기와의 관계
- □ 보험사기를 계획한 자일수록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개연성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을 경우 사고여부 또 는 피해규모가 가공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높음.
 - o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자일수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o 정상적인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손실 또는 부상정도 의 과장이 비교적 용이함.
 - 경찰 조사를 거친 사고의 경우 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사고내용 에 따른 부상의 객관성 추정이 가능하고, 허위입원에 대한 조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함.
- □ 따라서 보험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겠지만,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음.
 - o 보험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 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클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큼.
 - 즉, 보험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신고와 지급보험금간 양(+)의 관계가 관찰될 가능성이 큼.
 - o 반대로 보험사기가 강하게 존재한다면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림 1>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와 지급보험금의 관계 [지급보험금] ① 현행법규상 사고의 손실규모를 나타내는 지급보험금이 증가할수록 경찰에 신고한다. ② 보험사기가 존재할 경우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한다. (∵ 경찰미신고시 손실 과장이 용이함)

- □ 따라서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통제한 실증분석에서 경찰신고와 지급보험금간 음(-)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 입증이 가능함.
 - o 지급보험금으로 관찰되는 피해규모는 경찰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찰신고 여부는 보험사기를 통해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미침(<그림1>참조)³⁾.
 - o 상해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림 1>의 ②의 효과가 ①의 효과를 상쇄시켜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음.

나. 실증분석

- □ 10개 보험회사의 FY2009 사고데이터를 이용하여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를 통제한 후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여부와 지급보험금간 관계를 상해도별로 분석함.
 - o FY2009에 10개 보험회사가 지급한 45만 4,443개의 인적담보가 분석에 이용됨.
 - 담보종류는 대인배상!. 대인배상!+11. 자기신체로 구분됨.
 - o 종속변수는 지급보험금의 로그값, 독립변수는 경찰신고여부, 그 외 통제변수로 상해급수, 경찰신고여부×상해급수, 입원일수, 통원일수, 사고운전자의 성별 및 연령, 피해운전자의 성별 및 연령, 담보더미, 의료기관 종류더미, 보험회사더미, 사고지역더미 등이 사용됨.
 - o 최소자승법(OLS : 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분석함.
 - 경찰신고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나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IV: Instrument Variable)를 찾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활용가능한 도구변수가 없음⁴⁾.

³⁾ 경찰신고와 지급보험금간에 양(+)의 실증관계가 관찰될 수 있으나, 경찰신고여부와 지급보험금간 동시성으로 인해 내생성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근거로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를 부정적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움.



- 2011.6.7
- □ 분석 결과, 경미한 상해사고의 경우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찰미신고건일수록 피해정도를 과장했을 가능성, 또는 사기의도가 있는 사고자의 경우 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o 경찰신고여부가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방향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름.
 - o 상해급수 1~9급의 경우,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반면, 상해급수 10~14급의 경우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함.
 - 분석 결과, 다음의 추정식이 도출됨:

 $\log(\mbox{지급보험금}) = 16.08 + (0.43 - 0.04 \times \mbox{상해급수}) \times 경찰신고여부 \\ -0.20 \times \mbox{상해급수} + 추정계수 \times 기타통제변수 + 잔차항$

□ 경미한 상해사고에서 나타난 경찰신고여부와 지급보험금간 음(-)의 관계는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 4> 분석결과

변수	경찰신고 여부	상해급수	경찰신고 여부 × 상해급수	입원일수	통원일수	상수항	표본수	R²
추정계수 (표준오차)	0.43***	-0.20*** (0.00)	-0.04*** (0.00)	0.02*** (0.00)	0.01***	16.08*** (0.01)	454,443	0.81

주 : 1) 종속변수는 지급보험금의 로그값, 독립변수는 경찰신고여부이며, 그 외 통제변수로는 상해급수, 경찰신고여부×상해급수, 입원일수, 통원일수, 사고운전자의 성별 및 연령, 피해운전자의 성별 및 연령, 사고담보더미, 의료기관 종류더미, 보험회사더미, 사고지역더미(16개 광역시도) 등이 사용됨. 2) 최소자승법(OLS) 이용 3)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5. 시사점

- □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를 감안하여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o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과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⁴⁾ 이는 분석의 한계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보다 정교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임.



특히	자동차	보험	환자의	과잉진	료 및	! 허위(김원의	경우	혐의	입증	및	적발0	이 어려울	을 뿐	만
아니	가 처벌	근거의	도 미약혀	하기 때	문에,	인적시	·고의	경찰신	1고 [활성호	·를	통해	사전적의	오로	예
방할	필요가	있음	≧.												

- o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찰신고에 따른 행정비용과 사고운전자의 자기부죄 거절권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o 프랑스의 경우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당사자만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경찰신고가 없을 경우 발생된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5)
- □ 이를 위해서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가 단순히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신고의 진술거부권 침해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o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존치시킬 것은 못되나,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의 필요에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림. **KiRi**

⁵⁾ 주요국의 자동차사고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바람: 권기병,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관한 고찰"

